

산업분석 Vol. 132

# 「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」의 주요내용과 의의

정책전략실  
윤자영 책임연구원

## KATECH Insight

- ◆ 7.10. 법 시행을 앞두고,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통해 기업지원 및 산업육성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성장, 글로벌 진출, 인력양성, 기반조성 등 자동차산업 생태계 발전의 기틀 마련
- ◆ ‘미래자동차 및 기술의 정의’를 새롭게 도입하고, 범부처 민관합동 기관 설립, 기술개발, 특례마련, 규제개선 등 부품기업 지원 정책수단을 종합적으로 제도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

» '24.7.10. 「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(이하 ‘미래차법’)」 시행이 예정된 가운데, 3.14. 하위법령 입법예고를 통해 확장된 자동차 산업의 경계를 포괄하고, ‘전문기업 지정’, ‘디지털 혁신 촉진’, ‘협력모델 발굴지원’ 등 세부 기준 및 내용 공개

- ‘미래자동차 기술’에 소프트웨어 기술을 포함시켜 SDV, 서비스 분야를 아우르고, 부품산업을 생산을 비롯한 R&D, 실증, 생산시설, 유통 등 가치사슬 쏠 범위로 정의함으로써 정책 대상을 확장
  - 또한, 법 적용의 대상에 자동차 기술이 적용된 건설기계를 포함시킴으로써 기업들의 사업 다각화 및 외연 확장을 도모하고, 타산업으로부터의 New Player 진입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해석

## Ⅰ 미래자동차의 정의 Ⅰ

구분		내용
자동차*	환경친화적자동차	• 전기자동차, 태양광자동차, 하이브리드자동차, 수소전기자동차 외
	미래자동차 기술 적용차	• 자율주행자동차 • 재생에너지 및 신에너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자동차 • 녹색기술, 정보통신기술, 지능정보기술, 소프트웨어-소프트웨어융합기술 등을 활용해 품질, 성능 및 기능을 향상시킨 자동차

\* ‘자동차관리법’ 상 자동차와 덤프트럭, 아스팔트살포기, 노상안정기, 콘크리트믹서트럭, 콘크리트펌프, 천공기(트럭적재식) 등 운전면허가 필요한 건설기계 포함

- 정부부처,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‘전략회의’를 신설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,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촉진·지원제도 등 산업생태계 전반의 사항을 결정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 부여
  - (전략회의) 산업부 장관이 의장이며, 기재부, 교육부, 행안부, 환경부, 고용부 등 자동차산업 관계부처 기관이 포함되며 기본계획, 실행계획, 미래자동차 및 기술범위, 전문기업 지정, 특화단지 검토, 협력모델 발굴 등의 사항을 결정
  - (기본계획) ①국내외 시장분석, ②기술확보방안, ③미래차산업전환 지원, ④실증기반조성, ⑤인력양성, ⑥디지털혁신지원, ⑦국제협력·해외시장진출, ⑧재원조달방안 등을 포함, 이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 수립

- 산업 현장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측정하기 위하여 시장동향, 공급망 구조, 기술변화추이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공개하는 근거 마련
  - (실태조사 항목) ①국내·외 시장 현황 및 전망, ②인력 수요·공급현황, ③공급망 구조, ④투자현황, ⑤R&D·지식재산권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발간

## » 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활동을 위한 기술활동 조사·평가, 금융지원 등의 사업시행과 기술선도기업 발굴 근거를 마련하고,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협의체를 구성

- 중점 기술개발분야 및 목표가 담긴 기술개발시책 마련을 통해 기업에게 정보를 제공하고,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기술을 기업으로 이전, 공유, 활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구체화
  - (기술개발사업) ①R&D, ②기술수준 및 지식재산권의 전략적 조사·분석, ③기업-대학-연구기관 공동R&D, ④기술협력·기술이전, ⑤기술정보 유통, ⑥기술개발을 금융지원(융자, 보증 등)
  - (기술이전 및 사업화) 정부출연연구기관, 특정연구기관,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미래자동차 부품분야 연구성과물을 보유한 기관의 기술이전·공유·활용 및 사업화를 위한 금융지원\*
    - \* 시제품 제작, 설비투자, 지식재산권 활용, 인력·정보·설비·기술지도, 법률 상담, 우선구매, 홍보 등 포함
- 우수한 역량을 갖춘 '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'을 지정하고, 해당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지원 규정을 마련
  - 전문기업에 대해서 기술개발 → 사업화 → 글로벌 진출 등 전 주기에 걸쳐 지원하고, 협력모델 구축·발굴·지원, 특화단지 우선입주, 지식재산화 사업 등 사업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계획
  - 전문기업은 총 매출액 중 미래자동차 부품 비중이 50% 이상 또는 연구개발비 비중이 매출액의 3% 이상 요건을 갖춰야 하고, 우수 기술인력 비율, 연구개발 전담부서 등 기술수준과 경영역량을 평가하여 선정
- 금융, 인력, 수출지원, 기술개발 등 종합적 정책수립·지원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'협의체'를 신설하고, 기업들의 미래자동차 분야 신기술 창출 독려를 위한 '국가연구개발 지원특례' 마련
  - (협의체\*)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①전문가 파견, ②연구장비·시설 제공, ③기술지도, ④사업 컨설팅, ⑤해외진출·투자유치, ⑦지식재산권 출원을 지원하고, 미래자동차 기술범위, 협력모델 구축 등 협의
    - \* 정부출연연구기관,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, 한국무역보험공사,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공단,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외
  - (중소기업 지원)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 전환하려는 중소·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시설장비 및 기술자료 지원, 자금 보조, 교육 및 컨설팅 등에 대한 별도의 지원조항 마련
  - (국가연구개발 지원특례) 미래자동차 부품산업과 관련한 기술개발 사업 수행 시 정부출연금의 지원기준 및 현금부담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혁신 주체들이 산업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

## » 이업종 기업 간 융복합·상생협력을 도모하고, 미래자동차로의 원활한 사업전환 지원을 위하여 디지털 혁신 지원, 협력모델 발굴, 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기반조성

- 디지털 혁신 지원, 협력모델 발굴, 실증기반 개방·활용, 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대한 근거조항을 규정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미래자동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, 고부가가치 시장을 창출하도록 유도
  - (디지털 혁신 촉진) ①미래차부품-SW 간 융합, ②융합제품·서비스 상용화, ③데이터 활용 활성화, ④제조-유통-물류 등 생산 전 과정의 디지털 전환, ⑤산업 디지털전환 협업지원센터와 연계 등의 업무 지원

- (협력모델 발굴) 수요기업 또는 공급기업 사이의 보완적·수평적 협력모델을 확대할 수 있도록 교류프로그램 운영, 협력모델 구축·발굴을 위한 실태조사, 컨설팅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기업들의 신기술 개발의 비용절감과 위험분산을 도모
- (실증기반 개방·활용) 공공기관, 국공립·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실증·생산 관련 시설 및 시설정보를 기업에게 개방하고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제품, 서비스 등의 실증시험·신뢰성평가·성능검증 등을 촉진
- **데이터, SW 등 미래자동차 기술분야의 인력 부족 및 IT기업 선호현상을 극복하고 자동차산업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추진 및 계약학과 등 설치·운영의 지원근거 마련**
  - (인력양성) 교육기관 및 기업을 통한 현장연수사업, 재직자 능력개발, 교육과정 개설 및 취업연계사업, 기술인력 양성, 연구시설·장비 확충사업 추진과 더불어 정비인력 능력개발 사업을 포함시킴으로써 정비 분야의 정의로운 전환(Just Transition)\* 추진
    - \* 녹색 경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모든 관계자에게 가능한 한 정의롭고 포용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며,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아무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으로, 국제노동기구(ILO)에서 정의
  - (직업교육훈련과정 설치지원)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계약학과 등을 설치하는 경우, 산업체 부담금 및 학생부담 수업료 지원 가능

## » **기업투자의 걸림돌 제거와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투자, 리쇼어링기업, 중소·중견기업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고, 적극적인 규제개선 근거를 마련**

- **국내·외 기업의 미래차 공장시설 투자 시 재정적 지원 및 별도 요건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고, 미래차 부품산업 전환·재편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 근거 마련**
  - (부품산업 전환 특례) ①해외 기업의 미래차 공장시설 전환투자 시 현금지원(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2), ②미래차 공장시설 전환 시 재정적 지원요건 변경 가능(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24조), ③특화단지 입주기업의 사업재편 우선 처리(기업활력제고특별법 제9조)
  - (리쇼어링 지원) 해외 진출기업이 미래자동차 부품 공장시설로 국내 복귀 시, 해외사업장 청산·양도·축소 없이 지원대상으로 선정 가능
  - (중소·중견기업 특례) ①미래차자동차 부품사업 전환·재편 중소·중견기업 지원시책 수립 및 시행가능, ②중소·중견기업에 대한 지원(컨설팅, 정보제공, R&D, 기술상용화, 자금, 근로자교육, 금융지원, 판로확보 등)
  - \*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법 상 사업전환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 및 우선처리가 가능하고, 기업활력법 상 신산업판정심의 생략 및 우선처리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

- **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하고, 민간기업의 규제개선 신청 시 개선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절차 마련**
  - 이해관계자·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규제를 발굴하고,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규제합동개선반을 구성·운영하고, 규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종합적 검토\*를 통해 법령정비를 추진하도록 규정
  - \* ①규제개선 신청의 구체성 및 실행가능성, ②규제개선을 통한 목적달성 가능성, ③규제개선의 파급효과

## » 이번 「미래차법」은 '미래자동차 및 기술'의 정의를 새롭게 도입하고, 범부처 민관합동 기관 설립, 기술개발, 규제개선 등 부품기업 지원정책을 종합적으로 제도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

- 미래자동차 산업 범위에 소프트웨어를 포함시킴으로써 소프트웨어와 부품의 융합 및 서비스화 지원방향을 제시하였고, 미래차 시장정보 활용, SW전문인력 확보, 신기술·인프라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품기업 현황을 반영하여 지원근거를 마련
- 산업경계의 확장, 글로벌 패권 경쟁 격화, 탄소중립 대응, 공급망 불안의 상황 속에서 법 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사업들이 조속히 전개될 필요